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의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으로서 재정건정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0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03. [은행법]에 따른 은행
0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30인 이하 사업장)
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 퇴직연금사업자는 ①운용관리·자산관리계약 이행 의무를 수행하고, ②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③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 통지
- 운용관리 또는 자산관리 업무 계약 해지·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 보상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이전 및 퇴직연금제도 계속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의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사업자는 건전한 영업 관행의 정착과 사용자·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과 금지행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준수사항** : 퇴직연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지행위**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01.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 거부
 02.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강요
 03. 특정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의 제공
 04.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
- ※ 운용관리기관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음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금지됨
- 계약 체결시 가입자·사용자의 손실 부담 약정
 - 가입자·사용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약정
 - 가입자 개인 정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특정운용방법 제시